AI·DX사업추진단 운영규정

2026. 11. 16. 최초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AID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이하 “AID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설치한 AI·DX사업추진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전보건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사업단 조직과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AID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이란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전환(DX)을 기반으로 대학의 교육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산업 및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형 인재 양성과 대학의 지속 가능한 혁신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을 말한다.
2. “세부 프로그램”이라 함은 AID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수립·추진하는 영역별 과제 및 세부 추진 내용을 말한다.
3. “성과지표”라 함은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로 AID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에서 지정한 핵심성과지표, 사업단에서 선정한 자율성과지표 및 세부프로그램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측정하는 평가 준거를 말한다.

제2장 조직 및 기능

제4조(업무)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 목표 및 계획수립 등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 진행 및 사업 관계부서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업 및 예산의 조정 등 사업 전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업 성과관리 및 공유, 확산에 관한 사항
5. 소관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업운영에 부수되는 사항

제5조(성과관리) AID사업의 사업추진부서는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사업단은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과지표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부서의 협조) 사업단은 학부(과) 및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학부(과) 및 관계부서는 성실히 협조한다.

제7조(외부평가) AID사업 성과 점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별 AID 사업 성과에 대한 외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모니터링) 사업단은 사업의 운영계획과 집행 과정의 부합성을 수시로 평가하고,

모니터링 결과 사업비 부적정 집행사례가 발견되지 않도록 항시 모니터링 한다.

제3장 위원회

제9조(AI·DX사업추진위원회) AID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AID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 AI·DX사업추진위원회(이하“사업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사업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내·외부 위원 9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양 대학의 총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무위원급, 외부전문가를 포함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해당 사업연도까지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③사업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AI·DX 사업추진계획 수립
2. AI·DX 세부프로그램 실행계획 수립 심의
3. 사업비 집행지침 수립 및 예산 편성
4. AID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심의
5. 성과 공유 및 확산에 관한 계획
6. 사업 성과 홍보 계획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업추진에 관한 중요 사항

제10조(자체평가위원회) 성과 평가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AID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 자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①평가위원회는 총장이 정한 내·외부 위원 11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관대학 부총장으로 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해당 사업연도까지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체평가 계획 수립
2. 필수성과지표 및 자율성과지표 평가 및 환류
3. 세부프로그램 평가 및 환류
4. 대학 전체 및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정량적인 지표 평가
5. 수행사업계획에 의거 예산집행
6. 중간평가, 종합평가 실시
7. 기타 평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제11조(중복방지위원회) 중복 투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AID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 중복방지위원회(이하“중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증복방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내·외부 위원 8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양 대학의 부총장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임기는 위촉된 해당 사업연도까지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③중복방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AID사업 예산 중복투자방지 및 효율적 활용관리
2. AID사업 수행 결과의 지속적 모니터링 및 성과유도

3. AID사업 내 유사·중복 프로그램 및 사업 내용에 대한 검토
4.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및 중복 방지 개선방안 마련
5. 그 밖의 AID사업의 중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성과관리위원회) AID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AID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 성과관리위원회(이하“성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성과위원회는 내·외부 8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관대학 부총장으로 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해당 사업연도까지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성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AID사업의 적정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2. AID사업의 성과에 관한 연구, 개발, 조사, 분석 및 관리
3. AID사업의 성과 측정 및 환류
4. AID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의 사업추진방향 설정
5. AID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보고
6. AID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 세부프로그램 간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
7. 기타 성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제13조(연합대학 통합 거버넌스위원회(주관대학)) AID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의 추진사업별 성과관리를 위하여 AID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 연합대학 통합 거버넌스위원회(이하 “주관대학 거버넌스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주관대학 거버넌스위원회는 AID사업 수행부서 교직원 9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주관대학 거버넌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추진 사업별 운영 및 주요 성과 관리에 사항
2. 추진 사업별 자체평가결과에 관한 이행 및 환류에 관한 사항
3. 추진 사업별 사업비 점검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임기는 본 사업 추진 기간의 해당 직무에 있는 기간으로 하며,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직무 해당자는 위원직을 당연 승계한다.

제14조(참여대학 거버넌스위원회) AID 전환 중전 전문대학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참여대학의 사업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AID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 연합대학 통합 거버넌스 위원회(이하 “참여대학 거버넌스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참여대학 거버넌스위원회는 AID사업 수행부서 교직원 7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참여대학 거버넌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참여대학의 추진 사업별 운영 및 주요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참여대학의 추진 사업별 자체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환류에 관한 사항
3. 주관대학과의 사업 추진 및 성과 공유·협력에 관한 사항
4. 기타 참여대학의 사업 운영 및 추진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참여대학 사업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참여대학 사업 담당 센터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임기는 본 사업 추진 기간 중 해당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직무 해당자는 위원직을 당연 승계한다.

제4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15조(재원) 사업의 재원은 교육부의 AID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비로 충당한다.

제16조(사업비 관리) ①사업비 집행 및 관리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의 「AID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 집행 가이드라인」, AID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관리·운영지침 등을 따른다.

②사업비는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하며,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영한다.

③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증빙서류는 사업 종료 후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계획의 변경) ①사업계획(예산) 변경은 한국연구재단의 「AID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 집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목 내 변경, 비목 간 변경으로 나뉜다.

②사업비 비목 내 변경은 운영위원회 별도 심의 없이 사업총괄부서의 내부 검토 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③사업비 비목 간 변경은 반드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은 한국연구재단의 제출 요청 시, 정해진 기한 내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8조(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의 재규정을 준용하되, 사업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수행되었거나 집행되었던 사업추진 실적과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수행·집행된 것으로 본다.